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30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김미애 · 우재준 · 엄태영
이헌승 · 김태규 · 김대식
유상범 · 박수영 · 조정훈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26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

지 아니한 때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92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9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2조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1.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u>신고</u>) 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 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 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 단 신설>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u>신고 등</u>) ① ----- ----- ----- ----- ----- ----- -----, 이 경우 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 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 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변 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 부장관, 외교부장관, 재외동포 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
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보
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제
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
지 아니한 때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
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
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⑥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
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연금보험
료를 납부한 기간(제92조에 따
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2개월 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92
조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추후

⑤ (생략)	<u>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u> 1. <u>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u> 2. <u>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u>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